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Level of User Awareness for Illegal Downloading of Movie Content

이혜경*, 김희완**

용인송담대학 컴퓨터게임정보과*,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

Hae-Kyung Rhee(leephk@ysc.ac.kr)*, Hee-Wan Kim(kwkim@syu.ac.kr)**

요약

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 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심어 : | 영상 컨텐츠 | 불법복제 | 불법 다운로드 |

Abstract

Proliferation of high performance internet infrastructures finally allows their users download a single copy of regular movie just within a couple of seconds. Ease of accesses to the software for downloading consequently leads them insensitive to the ethics or legitimacy of their conduct. Thus, strong legal action is enforced for piracy over nationally through strengthen the copyright law. We in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see whether netizens prefer to download just for the matter of their convenience. Whilst the level of awareness is addressed even in a far-fetched manner in the area of music piracy and computer software piracy, the case of movie is much different in that we even fail to find any survey that has been made for movie piracy. The survey has been made by devising questionnaires for netizens and it was posted web WorldSurvey, which is the most prominent online survey site in Korea. To our surprise, 9 out of 10 respondents expressed they actually resort to illegal downloading for the reason of convenience. We realized one more surprise. More than 95% of netizens conspicuously aware of their downloading behaviors are mischievous and illegal without reservation.

■ keyword : | Movie | Piracy | Illegal Downloading |

I. 개요

1. 배경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사회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영상 컨텐츠 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GDP의 무려 6.9%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1]. 특히 영상 컨텐츠들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맞물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상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낮고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당국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컨텐츠 유통건수의 절반이상이 P2P와 웹 하드를 경유함으로써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 법이 영향을 미칠 일차적인 분야가 P2P와 웹하드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 앞서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상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아무 위법 의식 없이 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저작권 침해국가 중 하나로 주시되는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목적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해외 피해실태는 조사 연구되었지만[2] 국내에서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실태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과편적인 뉴스와 보고서를 통해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수준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 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된 영상 컨텐츠의 양을 구체적으로 측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의식 수준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조사가 가장 현재의 의식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법은 시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설문 대상자들에 대한 범위 설정의 한계성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현실에 근접한

의식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영상 컨텐츠의 불법 복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국내 영상 컨텐츠 불법 유통에 관한 의식구조를 설문을 통해 조사,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관련 사례 연구

본 연구의 주제인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의 의식 수준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 및 외국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유럽의 불법복제 방지 정책을 소개하고 간단한 사례를 통해 불법복제 의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이미 세계가 하나의 동동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의 불법 복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세계 각국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국내 불법복제 방지 정책 및 제도

2009년 7월 23일 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해비 업로더와 이에 편의와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를 신설하여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하는 사람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경고 또는 삭제 명령을 내리되,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과 게시판을 최장 6개월 정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불법복제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강화되지는 않았으나 네티즌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고 업계는 분주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에 따르면 영상과 영화의 경우 불법복제물 유통시장이 합법적인 유통시장에 비해 2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전체 온라인 컨텐츠 이

용건수 중 불법복제물 이용건수는 영상과 영화가 각각 90%와 8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 이면에는 디지털 컨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에 대한 사용자 의식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진흥원의 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하면 컨텐츠 유통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용자의 비중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컨텐츠 유통화에 대한 의식이 계속적으로 나아지리라 예상하고 있고, 컨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컨텐츠의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중요하리라 예상된다.

2. 미국의 불법복제 방지 정책 및 제도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불법 업로드에게 사후 통보만으로 불법 업로드 된 컨텐츠를 삭제하면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면책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종합적인 저작권 법제의 근간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저작권 보호와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적 이익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의 통지/삭제 제도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장만 도왔을 뿐 저작권 침해 방지 목적에는 비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서비스업계 자체적으로 DCMA를 기반으로 삼진아웃제, 저작권 필터링, 경고등을 통해 불법 영상 컨텐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3].

업로드 컨텐츠에 광고를 삽입해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의 컨텐츠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 피해를 방지하면서 수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한 예로 Myface는 MTV 방송과 제휴하여 자사 사이트에 MTV 영상이 업로드 될 경우 이를 탐지하여 식별 한 후 광고를 삽입하여 저작권 침해 없이 이용자의 컨텐츠 업로드를 지원하고 광고를 통한 수익도 얻는 원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합법적인 구매 유도로 컨텐츠 이용 및 수익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서비스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오스카 수상식을 앞두고 수상 후보작들의 불법 다운로드는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2009년도 오스카 수상식에는 모두 26개의 영화가 수상 후보작으로 올라와 경쟁을 벌였는데, 26개의 작품 중 23개의 영

화가 수상식을 하는 날까지 이미 DVD 수준의 품질로 온라인에서 공유되었다. 심지어 수상작 후보였던 한 작품은 2008년도에 다운로드 건수가 700만 건에 달했다. 더욱이 26개의 후보작 중에서 20개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DVD 복사본 형식으로 오스카상 투표자들에게 배포되었는데, 이들이 웹으로 흘러들어 얼마나 유포되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4].

이전에는 영화나 쇼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보려면 프로그램 전부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해야 했으나,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프로그램 전부를 복사할 필요 없이 즉시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리우드 컨텐츠를 무료로 감상하기 쉽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철저한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의 감시하기 힘든 상황이고, 반면에 영화사들은 얼마나 많은 양의 컨텐츠가 불법으로 빠져나가는지도 명백하게 가름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와 같이 스트리밍 방식은 효과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며 또한 다운로드 방식보다 사용자들이 더욱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작권 침해가 이 방법을 통해 진행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3. 일본의 불법복제 방지 정책 및 제도

2010년 시행되는 저작권법에는 사적인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음악 또는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다[5]. 이전에는 불법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에 해당되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적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 컨텐츠의 해외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나간 정책으로 우리나라에는 국내 컨텐츠의 해외 불법 다운로드 실체를 이제 확인만 하고 있는 단계로, 자국 컨텐츠의 해외 불법 복제에 관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서 휴대폰의 통화 연결음이나 비디오, 음성, 영상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마련하였다[6]. 이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컨텐츠의 업로드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도 금지함으로써 영상 컨텐츠의 불법복제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4. 독일의 불법복제 방지 정책 및 제도

독일저작권침해방지위원회가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건의 90%가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7].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화 해적판들은 누구나 쉽게 집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올라온 자료를 배포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명백하게 개재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컨텐츠의 불법복제 행위가 아주 빈번했는데, 강력한 법적 제재로 인해 점차 불법복제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영화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2007년 1년간 독일극장에서 상영된 영화 총 456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화들의 비율이 62%에 달하던 2006년에 비해 8% 감소한 54%로 나타났다. 또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들이 상영 전 며칠 전에 불법복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2006년에는 약 3.9일 전이었으나 2007년에는 상영 전 3.7일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그 밖의 해외 불법복제 방지 정책 및 제도

프랑스는 불법 다운로드 추적 전담기구인 “아도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번째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되는 네티즌을 법원이 제소하면 판사가 인터넷 접속차단(2~12개월), 벌금(최대 30만 유로), 징역(2년), 관련 ISP의 영업정지(1개월)/벌금(1,500유로) 판결을 내리는 삼진아웃 법안을 추진 중이다[3].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수가 80%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되었을 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불

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자녀를 방지한 부모는 최대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연령층이 청소년층이라는 잠정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국은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와 달리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부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규제 안을 제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대 불법 복제망인 Pirate Bay를 잠정적으로 폐쇄하였다. 이 사이트는 영화, 음악, 게임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로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을 잠정 폐쇄하였다. 최근 스웨덴 법정에서는 이 회사 설립자 4인에게 각기 1년 징역형과 더불어 각기 벌금 10억 원을 부과한 사례는 불법 복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III.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상 컨텐츠의 불법 사용에 관한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 컨텐츠의 불법 복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연구는 발표된 바 없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인터넷 정보문화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는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월부터 2개월간 국내 인터넷 사용 2000명을 상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정보문화지수가 낙제점인 61.6점을 나타낸 바 있다.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 의사소통 및 절제 능력, 인터넷 예절 등 정보규범에 대한 태도, 정보 활용 취향, 사회적 기여 정도 등으로 포괄적인 정보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정보규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불법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의 32%가 최근 1년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초점을 맞추

어 보다 구체적인 사용자 의식 수준을 연구하고자 국내 영상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사용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실제 정량적인 불법 복제에 관한 수치는 가름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사용자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의식 조사를 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면대면 설문지 조사 방법은 좀 더 다양한 조사대상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조사대상자들 선택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주변 환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을 통한 조사 방법도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국내외 영상 컨텐츠의 불법 사용에 관한 통계학적 문항 3개와 불법 감상이 위법인지 여부에 관한 의식 실태에 대한 문항 4개와 사용자 의식 개선 관련 문항 3개와 기타 2개 문항 등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7일 이틀간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대상자는 온라인 설문 사이트 '월드 서베이'의 회원들이었으며 총 응답자는 300명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약점인 설문자의 특정 연령 대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들을 1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골고루 각 연령대 별로 50명씩 분배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실제 설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았다.

표 1. 연령대별 설문 응답자 수

연령대	설문 응답자
10-20	62
21-30	70
31-40	59
41-50	57
51-60	38
61-70	12
70초과	2
합계	300

[표 1]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림 1]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40대까지 각각 약 20%대였고, 특히 2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70대 이상도 2명이 응답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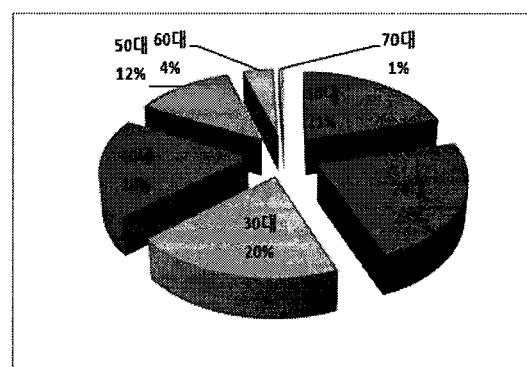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설문 응답자 비율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월부터 2개월간 국내 인터넷 사용 2000명을 상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정보문화지수가 낙제점인 61.6점을 나타낸 바 있다.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 의사소통 및 절제 능력, 인터넷 예절 등 정보규범에 대한 태도, 정보 활용 취향, 사회적 기여 정도 등으로 포괄적인 정보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정보규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불법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의 32%가 최근 1년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 비교해 볼 때 불법 다운로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국내외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감상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 응답자 10명 중 1명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9명은 빈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으로 감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62%가 월 1회 이상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월부터 2개월간 국내 인터넷 사용 2000명을 상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정보문화지수가 낙제점인 61.6점을 나타낸 바 있다.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 의사소통 및 절제 능력, 인터넷 예절 등 정보규범에 대한 태도, 정보 활용 취향, 사회적 기여 정도 등으로 포괄적인 정보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조사 대상자의 32%가 최근 1년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결과에 비교해 볼 때 불법 다운로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 감상한 영상 컨텐츠의 종류로는 외국영화가 31%로 제일 많았고 TV드라마나 국내영화가 각각 24%,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불법 감상하기 위한 경로로 P2P와 웹 하드 서비스 다운로드가 전체 응답자의 61%가 이용하고 있었고, 스트리밍 서버 방식은 16%로 나타남에 따라 아직까지는 스트리밍 서버 방식이 보편화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불법 감상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83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모두 196건을 차지하였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인터넷의 편리함으로 인해 영상 컨텐츠의 시장은 앞으로 영화관보다는 인터넷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함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한 이용확대가 주목된다.

영상 컨텐츠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감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1%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감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복제로 인한 영상 컨텐츠 감상이 위법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 5%만이 결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95%는 위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품 영상 컨텐츠 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5%가 가격인하를 선택하였고 이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상 컨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한 것이 현실인데, 현재의 가격보다도 더 저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아직도 영상 컨텐츠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

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강력한 법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불법 영상 컨텐츠를 계속 이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3%가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였고, 특히 그때부터는 절대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40%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들은 이미 불법 영상 컨텐츠의 이용이 불법임을 깊이 의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동시에 홍보가 병행된다면 영상 컨텐츠의 불법 다운로드가 개선되리라 예측된다.

종합적으로 정리 해보면, 영상 컨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는 응답자의 90%가 이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보편화되었으며 그 경로로는 P2P방식과 웹 하드 서비스 다운로드 방식이 2/3를 차지하였다. 불법으로 영상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89%의 응답자가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개선의식 수준면에서는 90%의 응답자가 의식 개선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응답자의 5%인 16명만이 불법 다운로드가 위법임을 의식하지 않았다. 정품 영상 컨텐츠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격인하를 지적함으로써 정품 영상 컨텐츠의 가격이 적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정품 영상 컨텐츠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1.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인터넷만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들은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응답자 총 300명 중 10%에 해당하는 30명만이 전혀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감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90%가 빈도수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1회 이상 인 경우가 전체의 61.7%를 나타내어서 적어도 3명 중 2명은 매 월 1번 이상은 불법으로 영상 컨텐츠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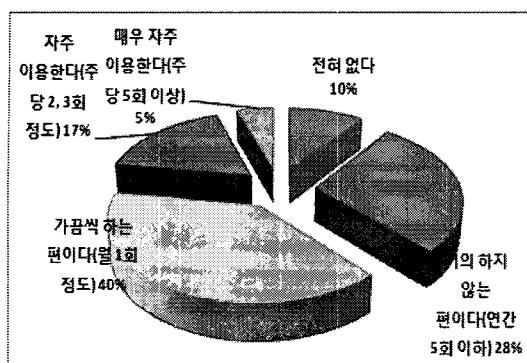


그림 2.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의식 조사

2. 불법 감상 영상 컨텐츠의 종류별 선호도 관점에 서 본 의식 수준

비용을 지불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감상하는 영상 컨텐츠의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에 [그림 3]에서와 같이 외국 영화가 30.89%로 제일 높았으며, 국내 영화가 22.36%, 국내외 TV드라마가 24.39%로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가 78%를 차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가 78%를 차지하였다. 이 설문 문항은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300명의 응답자로 492건의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1인 당 1.64개 이상의 종류를 선호하는 결과이다. 동영상 컨텐츠인 경우 모두 약 22%로 나타났고, 사용자들이 대부분 영화를 선호하였다. 외국영화인 경우 300명 중 152명이 응답하여 두 명 중 한 명은 선호한다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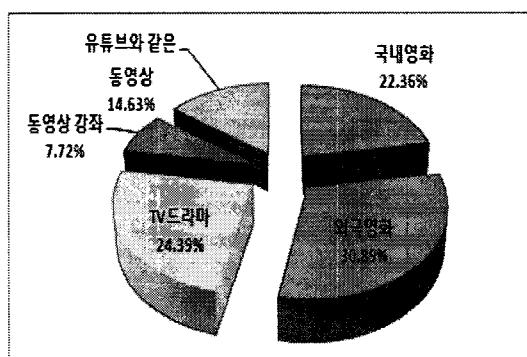


그림 3. 영상 컨텐츠의 종류별 선호도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3. 불법 영상 컨텐츠 유통 경로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응답자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2.71%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2P 서비스 다운로드를 통해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통해 28.95%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총 373건의 복수 응답 중 약 62%에 해당하는 230건이 P2P와 웹 하드 서비스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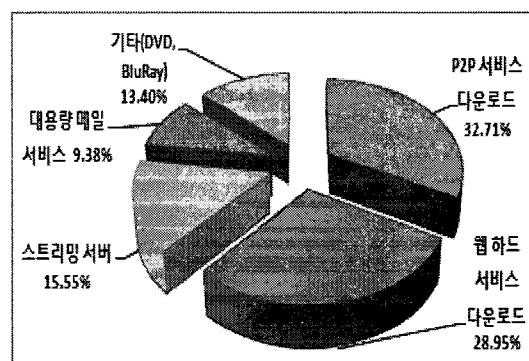


그림 4. 불법 영상 컨텐츠 유통 경로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에 의하면 포털, 웹하드, P2P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는 본 설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불법 유통 경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버의 서비스 성능 향상으로 15.55%가 다운로드 되지 않고 동영상 파일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용자 불법 컨텐츠 이용 사유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정상적인 비용을 비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상 컨텐츠를 감상하는 이유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2.86%인 183명이 비용이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상태에서 모두 427건의 응답자 중 46%인 196명이 시간

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의 특성인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결과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8.67%인 37명이 불법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살펴볼 때, 합법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속히 보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전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정도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사용자들이 비용 지불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해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책정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보호에 관련된 불법복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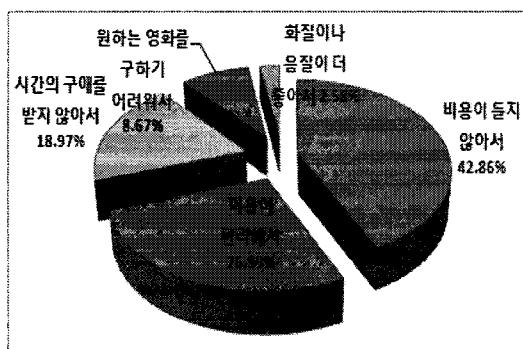


그림 5. 사용자 불법 컨텐츠 이용 사유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5.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한 영상 컨텐츠 사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영상 컨텐츠를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감상할 의향이 있는 가라는 설문에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90% 정도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감상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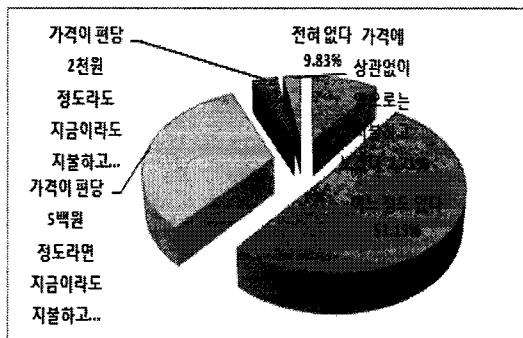


그림 6.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한 영상컨텐츠 사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6. 영상 컨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위법행위 인가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저작권 침해사건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홍보부족 및 교육결여로 아주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나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무단 복제가 왜 위법인가 하는 논란도 있기는 하나, [그림 7]과 같이 본 의식 구조 설문 결과에 의하면 약 95% 정도의 응답자가 영상 컨텐츠의 불법복제가 위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30%만이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가 당연히 위법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약 64%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조금 위법인 것 같다는 미약한 의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홍보 및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불법복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보다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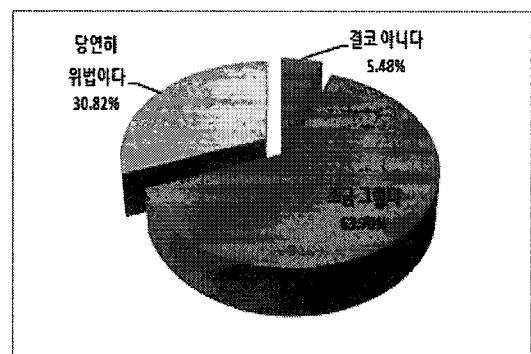


그림 7. 영상 컨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위법행위 의식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7. 정품 영상 컨텐츠 사용 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그림 6]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0% 정도의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림 8]에서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의 55%가 정품 영상 컨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법 영상 컨텐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정품의 가격이 사용자들의 의식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다. 아직 영상 컨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 33%의 응답자들이 이용자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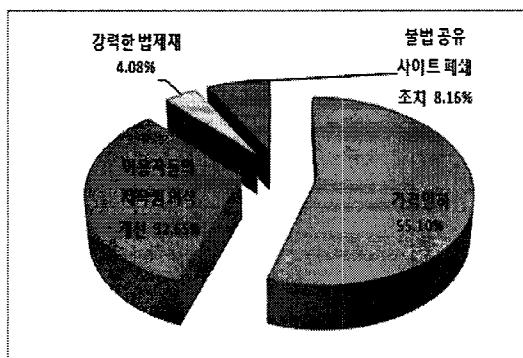


그림 8. 정품 영상 컨텐츠 사용 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문화광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불법복제에 대해 ‘비 친고죄’가 적용됨에 따라 상습적인 대규모 침해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서비스업체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고취할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실시 중이다. 본 설문에서도 약 12%에 해당하는 36명이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 및 강력한 법적 제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8. 강력한 법 제재 도입 시 불법 복제 영상 컨텐츠 계속 이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설문 응답자의 95%가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가 위법이라는 의식을 나타낸 상태에서 만일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도입해도 불법 복제 영상 컨텐츠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설문에 [그림 9]과 같이 응답자의 약 40%가 절대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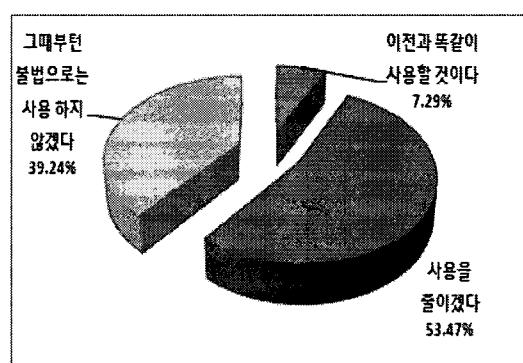


그림 9. 정품 영상 컨텐츠 사용 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조사

이는 불법복제에 대해 법적 제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법적 제재의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만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게 된다면 불법 복제품에 대한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항목의 응답자 288명 가운데 21명은 법적 제재와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연령층은 아마도 10대에서 20대 일 것으로 추정된다.

9.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 및 사용에 관한 사용자 의식 조사

- ◆ 조사기간 : 2009-03-06 ~ 2009-04-05
- ◆ 분류 : 컴퓨터/인터넷
- ◆ 문항수 : 11
- ◆ 응답수 : 300

1. 국내외 영상컨텐츠(영화, TV, 동영상 등)를 비용을 지불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합계	300 명	100.%
1. 전혀 없다	30 명	10.00%
2.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연간 5회 이하)	85 명	28.33%
3. 가끔씩 하는 편이다(월 1회 정도)	118 명	39.33%
4. 자주 이용한다(주당 2, 3회 정도)	52 명	17.33%
5. 매우 자주 이용한다(주당 5회 이상)	15 명	5.00%

2.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어떤 종류의 영상 컨텐츠를 주로 감상하십니까?		
전체 합계	492 건	100.00%
1. 국내영화	110 건	22.36%
2. 외국영화	152 건	30.89%
3. TV드라마	120 건	24.39%
4. 동영상 강좌	38 건	7.72%
5.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72 건	14.63%

3.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감상하셨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감상하셨습니까?		
전체 합계	373 건	100.00%
1. P2P 서비스 다운로드	122 건	32.71%
2. 웹 하드 서비스 다운로드	108 건	28.95%
3. 스트리밍 서비스	58 건	15.55%
4. 대용량 메일 서비스	35 건	9.38%
5. 기타(DVD, BluRay)	50 건	13.40%

4.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영상 컨텐츠를 감상하신 경우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합계	427 건	100.00%
1. 비용이 들지 않아서	183 건	42.86%
2. 이용이 편리해서	115 건	26.93%
3.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81 건	18.97%
4. 원하는 영화를 구하기 어려워서	37 건	8.67%
5. 화질이나 음질이 더 좋아서	11 건	2.58%

5. 영상 컨텐츠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으로 감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체 합계	295 명	100.00%
1. 전혀 없다	29 명	9.83%
2. 어느 정도 있다	151 명	51.19%
3. 가격이 편당 5백원 정도라면 지금이라도 지불하고 보겠다	96 명	32.54%
4. 가격이 편당 2천원 정도라도 지금이라도 지불하고 보겠다	11 명	3.73%
5. 가격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지불하고 보겠다	8 명	2.71%

6. 영상 컨텐츠에 대해 비용 지불 없이 무단 복제하여 감상하는 것이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계	292 명	100.00%
1. 결코 아니다	16 명	5.48%
2. 조금 그렇다	186 명	63.70%
3. 당연히 위법이다	90 명	30.82%

7. 성인 영상 컨텐츠 사용을 위해 선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계	294 명	100.00%
1. 가격인하	162 명	55.10%
2. 이용자의 저작권 의식 개선	96 명	32.65%
3. 강력한 법제재	12 명	4.08%
4.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 조치	24 명	8.16%

8. 강력한 법 제재를 도입한다고 해도 불법 복제 영상 컨텐츠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전체 합계	288 명	100.00%
1. 이전과 똑같이 사용할 것이다	21 명	7.29%
2. 시용을 줄이겠다	154 명	53.47%
3. 그때부턴 불법으로는 사용 하지 않겠다	113 명	39.24%

9. 귀하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신니까?		
전체 합계	293 명	100.00%
1. 1시간 미만	13 명	4.44%
2. 2시간 미만	64 명	21.84%
3. 3시간 미만	67 명	22.87%
4. 4시간 미만	36 명	12.29%
5. 4시간 이상	113 명	38.57%

10. 불법 사용에 있어서 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합계	295 명	100.00%
1. 있다	23 명	7.80%
2. 없다	272 명	92.20%

11. 타인 주민번호 사용 경우 귀하의 연령은?		
전체 합계	169 명	100.00%
1. 10대	33 명	19.53%
2. 20대	31 명	18.34%
3. 30대	39 명	23.08%
4. 40,50대	56 명	33.14%
5. 60대 이상	10 명	5.92%

IV. 의식조사 결과 분석

1. 영상 컨텐츠 불법 감상 동향 및 이용 경로

설문을 통한 영상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사용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감상은 생각 이상의 심각한 수준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고, 또는 좋은 방향으로의 사용을 위해 책임을 동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인터넷 사용이 인간 본연의 권리임으로 무제한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를 해도 허용하는 것은 정책 수립자들이 무수히 고민하게 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나, 이는 불법 다운로드의 시장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 영화 산업에서 불법 복제로 인해 한해 200억불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별 의식 없이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인터넷설문응답자들의 연령대를 1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골고루 분배하여 조사함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는 더 이상 10대, 20대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평균 3시간이 넘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 인터넷을 통해 발생되는 영상 컨텐츠의 불법 감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이용 경로로 사용되는 방식은 P2P방식으로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사용되고 본 설문에서는 P2P방식과 아울러 웹 하드 서비스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로 파일을 업로드하기엔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일 호스팅"방법으로 파일을 업로드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는 이러한 다운로드 방식보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보하리라 예상한다. 스트리밍 방식은 가격도 저렴하며 또한 다운로드 방식

보다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작권 침해가 이 방법을 통해 진행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불법으로 감상하는 컨텐츠로는 주로 국내외 영화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앞으로 영상 컨텐츠 산업의 불법 복제 피해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불법 업로드가 많지만, 앞으로는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 업로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24시간 온라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영상 컨텐츠의 합법적 감상 유도 가능성

본 논문은 영상 컨텐츠의 불법 복제 상황과 앞으로의 개선 여지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주로 불법으로 영상 컨텐츠를 사용하는 이유가 비용이 들지 않고 시산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품 영상 컨텐츠 사용에 대한 가격 인하가 조정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로 개인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상습 해비 업로더를 감시한다든지, 합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상에서의 합법적인 유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이트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우수 사이트를 클린 사이트로 지정해 이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의식 조사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선진국 형 저작권 법 제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은 온라인의 첨단화와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 영상물 불법복제가 점점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발맞추어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개정

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23일 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상습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와 이에 편의와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를 신설하여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사람에게 문화관광부 장관이 경고 또는 삭제 명령을 내리고, 세 번째로 적발된 경우 사용자 계정과 게시판을 최장 6개월 정지시키고 있다. 아직 불법복제 기준이 변경되거나 강화되지는 않았으나 개정법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에서 정한 침해사례가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저작권법의 범위와 침해 기준이 폭 넓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2.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청소년 대상 학교 교육의 필요성

불법복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은 아직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의식 설문조사 응답자의 5.5% 만이 불법복제가 위법이라고 한 바와 같이 아직 불법 인지 의식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 인지 비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해외에서와 같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이 절실히다. 영국의 예와 같이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 부모가 벌금 등으로 그 책임을 지는 엄격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 대상 교육이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온라인을 통한 합법적 영상 컨텐츠 유통 모델 활성화

설문 응답자의 92%가 영상 컨텐츠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으로 감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과 같이, 불법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와 더불어 불법 거래 시장을 합법적 거래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응답자의 약 93%가 불법 다운로드를 자제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잠재적인 합법적

컨텐츠 이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영상 컨텐츠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과 더불어 영상 컨텐츠를 패키지로 이용할 경우 파격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컨텐츠의 심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VI. 결론

음악저작물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서 다방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중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영상 컨텐츠에 대한 대중의 의식 수준은 연구된 바 없다. 국내 영상 컨텐츠의 해외 유출문제는 연구되어 발표되었으나 국내에서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대한 의식 수준을 설문을 통해 조사해봄으로써 영상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등 모두 8가지 관점에서 의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 만이 비용 지불 없이 영상 컨텐츠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90%가 빈도수에 관계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경험해 보았다고 하였다. 약 62%가 월 1회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상자의 32%가 최근 1년간 불법 다운로드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의 이용 경로로는 P2P방식, 웹하드 서비스, 그리고 스트리밍 서버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불법 다운로드 하는 이유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43%로 가장 많았다.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설문자는 46%를 나타내었고 약 9%만이 원하는 영화를 구하기 어려워서였다고 응답하였다. 약 5%의 응답자만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복제

가 위법이 아니라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약 95%가 위법임을 인식하였다. 정품 영상 컨텐츠의 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55%가 제품 사용 가격 인하를 들었고, 약 33%가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선택하였다. 영상 컨텐츠의 불법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약 93%가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약 95%가 1시간 이상이라고 하였고 하루 4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39%나 되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3시간 12분 정도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총을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루 분포하여 설문조사를 향에 따라, 연령총에 상관없이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3시간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생되는 영상 컨텐츠의 불법 감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소개

이혜경(Hae-Kyung Rhee)

정회원



공학과(공학박사)

- 1979년 2월 : 승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사)
- 1985년 4월 :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공학석사)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공학박사)
- 1988년 3월 ~ 1989년 2월 : 국립천안공업전문대학 전자계산과 전임강사
- 1992년 3월 ~ 2001년 8월 : 경인여자대학 멀티미디어정보 전산학부 조교수
- 2001년 9월 ~ 현재 : 용인송담대학 컴퓨터게임정보과 부교수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 동시성제어, 정보보호

김희완(Hee-Wan Kim)

정회원



사)

- 1987년 2월 :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사)
- 199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공학석사)
- 200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공학박사)

- 1988년 : 한국전력공사 정보처리처,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시스템 수석간리원
 - 200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분산 DB, 보안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관리

- [1]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저작권의 물길을 따라 지식산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저작권 산업팀, 2007.
- [2] 김민석, “우리 DC 기업의 해외 피해 실태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2005.
- [3] 김성우, 김진우,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반응과 해외 동향”, kt경제경영연구소, 2009.
- [4] B. Stelter and B. Stone, "Digital Pirates Winning Battle With Studios," www.nytreprints.com, 2009.
- [5] kt경제경영연구소, "SW 및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해외 정책 사례", 2009.
- [6] “일본, 불법 사이트서 다운로드 금지 추진,” <http://www.etnews.co.kr/news/>
- [7] 성경숙, “KOFIC 해외통신원 리포트, 독일의 불법 복제 피해 현황과 대책”, 영화진흥위원회, 2008.